

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

1. 신청유형

구분	신청등급	발급 될 자격증 급수
국가시험 응시자	1급	합격 → 1급, 불합격 → 2급
국가시험 미응시자	2급	2급

2. 2급 자격증 신청자 구비서류

접수기간	서류준비자	구비서류	비고
● 2차 서류 2021년 02월 25일 (목) 까지	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(2급신청자) & 1급 국가시험 필기불합격자	졸업증명서 1부	-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-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
		성적증명서 1부	- 90일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-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(단,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(필수10과목, 선택4과목)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함)
		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	- 2010년도 입,편입자부터 적용 제출 - 실습지도자/ 실습기관/ 실습지도교수님 날인(서명)여부 확인요망 - 확인서 발급일자(실습기관/ 실습지도교수) 기재여부 확인요망
		외국인(외국국적자) 추가 제출 서류	- 외국인(재외국민인) 경우 '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' 또는 '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' 해당서류 1부 -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 :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, 공증 받아 제출해야함 :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

3.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

- ▶ 2021년 제 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**학과사무실에 제출할 추가 서류 없음.**
- ▶ 졸업예정(학생) 중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**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업회에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(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)
- ▶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<1급 자격증교부> 됩니다.